



건설관련 법률상담

곽동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제3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

Q A사는 B사에게 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원에 도급주었고, B사는 그 공사를 C사에게 다시 그대로 하도급주어 C사가 시공하기로 하였다. 위 3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대금은 A사가 B사의 입회 하에 C사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C사가 공사를 시작하여 기성고가 2억원인 상태에서 B사의 채권자 D가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 C사와 D는 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얼마의 권리를 갖게 되는지?

A 본 사례와 같은 일이 도급과 하도급이 공존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게 된다.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채권양도의 경우인데,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사의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C사에게 이전하여 C사가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B사는 공사대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B사가 공사대금채권을 C사에게 채권양도하고, A사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본 사례를 이런 채권양도로 본다면,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예컨대 내용증명우편 등)에 의하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든지,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야 제3자(본 사례의 D)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는 그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A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런 경우 채권양수인 C는 제3자인 D에게 대항할 수 없고, D가 우선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D가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유효하여 D가 전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게 된다.

둘째는 하도급대금의 직불약정인데,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C사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공한 범위 내에서는 A사가 그 공사대금을 C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B사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이런 하도급대금의 직불약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즉, 실제로 직불을 하지 않아도 하수급인의 직불 채권만 남고,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과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본 사례를 이런 3자 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로 보는 경우, 그 직불합의만으로써 곧바로 C의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한 A사의 직불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C사가 시공하여 하도급대금채권이 발생한 한도에 한하여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도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D의 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A사에게 송달될 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3자간 직불합의에 더하여 C사가 시공을 하여 C사에게 채권이 발생한 부분은 C사에게 귀속되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은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C가 아직 실제 시공

하지 않은 부분은 3자간 직불합의가 D의 채권 압류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C에게 직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B의 A에 대한 그 부분 채권도 아직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리고 B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B의 채권자인 D는 이를 압류, 추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다54108 참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B의 채권자 D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압류명령이 A에게 송달되었을 당시에 C가 실제 시공한 기성고가 얼마인지 하는 것이 되겠다. 사례에서는 그 당시의 기성고가 2억원이라는 것이므로 그 2억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C가 A에 대하여 직불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B의 A에 대한 채권은 그 부분만큼은 이미 소멸하였다.

그러나 B의 채권 중 위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C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의 압류는 그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다만 위 8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당장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차 그 공사부분이 실제 시공되어 실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추심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자 간 직불합의는 위의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도급법상의 직불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채무자인 A사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3자 간 직불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따져서 대응하여야 한다. ☉